

[]내용 변경신고서
국민연금 지역가입자 []자격상실 신고서
[]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[]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
[]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

※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(신청인)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세대주 ※ 건강보험만 적습니다.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(e-mail)	
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· 국내거소신고번호)	변경(상실) 연 월 일	국민연금		건강 보험	외국인		변경내용	
			초일 취득·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	변경(상실) 부호	변경(상실) 부호	국적	체류 자격	변경 전	변경 후
가입자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			희망[]					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내용 등 변경(자격상실)에 관한 사항을 신고(신청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·신청인(세대주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/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신고인 (신청인) 제출서류 (국민연금)	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(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국민연금	"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"은 종사업종의 변경,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종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.
------	---

작성방법

공통사항	1. "성명" 및 "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"란에는 주민등록표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. 2. "부호"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. 3. "변경 전"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, "변경 후"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.
건강보험	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, 체류자격(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), 체류기간(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 만료일까지)을 적습니다.

내용변경 및 상실(사유) 부호

국민연금	[내용변경 부호]: 주민등록번호<1>, 성명<2>, 기준소득월액<3>,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<13>, 농어업인 해당 여부<14>, 주소(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국내거소)<17> [상실사유 부호]: 사망<1>, 국외이주(국적상실)<2>,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<4>,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<5>, 60세 도달<6>,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<7>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<10>, 국외거주<14>,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(60세미만)<15>,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<16>, 협정국 연금가입<17>, 1년 이상 행방불명<18>, 체류기간만료(외국인)<19>, 적용제외 체류자격(외국인)<20> [초일 취득·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]: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,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"초일 취득·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"란의 "희망[]"의 "[]"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건강보험	[상실부호]: 사망<02>, 취득취소<03>,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<04>,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<10>, 거주불명 등록<14>, 외국인(재외국민) 출국<18>, 이민출국<19>,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<20>, 행방불명<21>

처리 절차

